

武寧王陵 賣地券文의 “不從”과 “律令”

이 정 효*

<목 차>

- I. 머리말
- II. 武寧王陵 墓誌와 賣地券
- III. 中國 賣地券의 用例
- IV. 검증과 문제점
- V. 맺는말

국문요약

이 논고는 무령왕릉 지식에 나타난 매지권문 중 “不從律令”의 문구에 대해 한대 이후 육조의 묘지와 매지권에 대한 본격적인 비교와 검토를 통하여 관련용어와 개념을 정리하면서 이를 해석하고 검증하였다.

여기서 필자는 기존의 해석처럼 율령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석하기보다 “不從”과 “律令”을 개별적으로 이해하고 “不從”은 즉 종속되지 않는다는, 무령왕이 묘역의 주인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함이 어떨까 하는 견해를 제시하면서 매지권문의 관용어구인 “律令”은 문서 말미의 종결어구로서 보다 강력한 알림과 선포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을 피력하였다.

또한 앞에서 중국 매지권의 연원과 형식을 고찰해보므로써 매지권이 동한이전 시기 많이 나타나는 고지책(告地策)과의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과 함께 관련된 유사한 유물들의 용어를 정리하고 도식화하여 보다 명확하고 심도 있는 이해를 도모하였다.

주제어 : 무령왕릉(武寧王陵), 지식(誌石), 매지권(買地券), 묘지(墓誌), 부종율령(不從律令)

* 동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원

I. 머리말

1971년 여름 공주 송산리 고분군에서 기적적으로 백제 무령왕릉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었다. 백제사상 전례가 없던 독특한 전축분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다행히 도굴되지 않아 그 출토유물 또한 풍부하고 수준 높은 것이었는데 그 종류만 100종이 넘고 양적으로도 2,000점이 넘는 유물이 쏟아져 나왔으며 12점은 국보로 지정되었다.¹⁾ 진묘수(鎭墓獸), 동경(銅鏡) 등 중국 남조와의 연관성을 나타내주는 유물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어 그동안 우리나라 고대역사에서 전대 미문의 역사적 단면과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였다.²⁾

무령왕릉은 무엇보다 그 무덤의 주인임을 뚜렷이 하고 있는 지석(誌石)이 발견되어 보다 구체적인 무령왕의 실존 연대와 함께 당시의 풍습, 의례, 사상과 신앙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었다.³⁾ 2매의 지석은 구체적으로 무덤의 주인이 무령왕과 그 왕비라는 묘지(墓誌)가 각각 1장, 그리고 왕의 묘지 뒷면에는 십간십이지가 새겨져 있었고 무령왕이 지하세계의 신(神)에게 고하여 묘지를 매입했음을 증명하는 문서인 매지권(買地券)이 왕비 묘지의 뒷면에 새겨져있었다.

그러나 이 매지권문의 전반적인 해석은 대체로 통일된 견해를 보이고 있는 반면 말미의 “不從律令(부종율령)”이라는 네 글자는 아직도 의문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다. 처음 이 “부종율령”이라는 대목을 접한 학계는 이 매지권을 근거로 백제의 율령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했다. 먼저 70년대 이병도선생은 “현행 율령에는 따르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였고 임창순선생은 주술적인 말구임을 주목하였는데 이 해석에서는 역시 “어떠한 율령에도 구속받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하였다.⁴⁾ 이후 80년대 정구복선생은 “절대로 물릴 수 없다”는 단서 조항으로 보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⁵⁾ 부종율령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어느 정도 일단락지

1) 금제관식(왕: 국보154호, 왕비: 155호), 금제 귀걸이(156,157호), 금제목걸이(왕비, 158호), 금제뒤꽂이(왕, 159호), 금제팔찌(왕비, 160호), 동경(161호), 석수(162호), 지석1(163호), 머리받침(왕비, 164호), 다리받침(왕, 165호). 『武寧王陵』, 1973, 文化財管理局.

2) 남조는 육조문화의 연결선상에 있는데, 일반적으로 육조라 하면 남경에 도읍하였던 동오(東吳, 222~280), 동진(東晉, 317~420), 송(宋, 420~479), 제(齊, 479~502), 양(梁, 502~557), 진(陳, 557~588)의 여섯 왕조를 일컬으며, 흔히 서진(西晉, 265~317)통일기이후의 동진과 남조 즉 송·제·양·진에 걸친 시기를 특유의 남조문화가 꽃피운 획기로서 지칭되고 있다.

3) 고대의 지석(誌石)이란 매장 시 후일 봉분(封墳)이 붕괴되거나 분묘를 잃을 것 등에 대비하여 마련한 것으로, 피장자의 인적 사항이나 생몰연월일 및 관계(官階)와 가계(家繼), 세덕(世德)과 사적(事蹟), 무덤의 소재 등을 기록하여 묻은 판석(板石)이나 도판(陶板) 등을 말한다.

4) 李丙燾, 1976, 「百濟武寧王陵 出土誌石에 대하여」, 『韓國古代史研究』, 567쪽; 任昌淳, 1974, 「買地券에 對한 考察」, 『武寧王陵發掘調査報告書』Ⅱ.副葬品 3, 60~61쪽.

어 지는 듯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렇게 “不從”과 “律令”을 붙여서 이해하게 될 경우 당시 중국의 매지권문에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율령이라는 문구의 의미와 해석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이 문구가 가지는 효과 또한 사뭇 다르게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까지 무령왕릉 매지권문과 유사한 문구가 중국에서 발견되는 등 적지 않은 관련자료의 소개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不從律令”에 대한 해석은 이견은 있으나 아직 예전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무령왕릉 지식뿐 아니라 관련 유물의 진위성 자체마저도 의혹을 품는 사람들이 생겨날 지경이다. 그러면 이렇게 매지권문이 해석된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 것일까. 필자는 이에 초점을 맞추고 기본적으로 매지권문이 무엇이며 어떻게 생겨나서 변천해 온 것인지 우선 그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고 그 형식을 분석하여 무령왕릉 매지권이 가지는 시공적 위치를 재조명함으로써 자칫 잘못 이해되고 있었던 부분은 없는지 과연 그에 타당한 시의해석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해제하도록 한다.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지식에 새겨진 명문은 과연 묘지인가 아니면 매지권인가. 이에 대한 논란도 관련연구에서 끊임없이 논의되어 온 것이다. 이에 대해 이하 본문에서는 우선 무령왕릉 지식의 명문을 먼저 살펴보고 한대 이후 육조의 묘지와 매지권에 대한 본격적인 비교와 검토를 통하여 관련용어와 개념을 정리하면서 무령왕릉 매지권을 다시금 회고하여 검증하는 수순으로 논고를 진행하도록 한다.

II. 武寧王陵 墓誌와 賣地券

그럼 먼저 2개의 지식 가운데, 무령왕의 지식은 섬록암제(閃錄岩製)의 장방형 평판암석으로 가로 41.5cm, 세로 35.2cm, 두께 5cm이다. 중앙 약간 위쪽에는 지름 1.1cm의 구멍이 있고 표면에는 세로줄 선을 음각하여 7행을 만들고 6행까지 52자의 명문을 음각하였다. 2매의 지식은 공히 무덤방 안에서 지문을 읽을 수 있도록 위치하고 있었다.

지식의 양(陽, 앞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5/ 鄭求福, 1987, '武寧王 誌石 解釋에 對한 一考', 『宋俊浩教授停年紀念論叢』, 44~45쪽.

寧東大將軍百濟斯麻王年六十二歲癸卯年五月丙戌朔七日壬辰崩到乙巳年八月癸酉朔十二日甲申安厝登冠大墓立志如左(?)

그 해석은 다음과 같이 한다.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이 62세 되는 계묘년(523) 5월병술 초하루7일임진에 돌아가셨다. 을사년(525) 8월계유 초하루12일갑신에 안장하여 대묘에 올려 모시고 이와 같이 묘지를 세운다.>

그런데 이 지식문의 내용을 보면 무령왕이란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이 지식 이 무령왕의 것이란 것을 직접적으로 알려 준 것은 바로 “사마왕”이라는 휘자(諱字)이다. 무령왕은 사후의 시호(諡號)이고, 재위 기간에는 사마왕(斯麻王) 또는 융왕(隆王)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 『삼국사기』백제본기 무령왕 즉위조에 “무령왕의 이름은 사마(斯麻) 또는 융(隆)이니 모대왕의 둘째이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 또한 그 앞에 명시한 영동대장군(寧東大將軍)은 21년(521) 12월 중국 양(梁) 무제(武帝) 보통(普通) 2년에 양나라로부터 받은 “사지절도독백제군사 영동대장군(使持節都督百濟諸軍事 寧東大將軍)”이란 작호를 기록한 것이다. 이어지는 문구는 무령왕이 세상을 떠난 시점과 나이를 추정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삼국사기』에는 왕들의 재위 연도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지식을 통해 즉위 당시의 나이를 알 수 있게 되었다. 지식을 참조하면 무령왕은 재위 23년인 62세에 세상을 떠났고 그 해가 523년이다.⁶⁾

그리고 이 지식에는 중국에서도 황제의 죽음에 주로 사용했던 (崩)자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백제왕으로서의 죽음을 표현한 것이니 당연한 일이겠지만, 중국에서 황제는 붕(崩)을, 왕이나 귀인에게는 홍(薨), 때로는 아랫사람에게 죽음을 당했을 때 시(弒)자를 사용하는 등은 전적(典籍)의 기술에서 비교적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편 왕비의 지식은 수종(壽終)으로 표현하고 있어 “남존여비(男尊女卑)”의 유교사상과 관련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⁷⁾ 중국남북조의 역사적 상황과 백제의 문화적 성향을 고려하면 당시로서는 개연적인 사실일 수 있는 것인데 자칫 중국에 대한 책봉과 종속관계를 야기할 수 있었던 영동대장군이란 작호를 장엄(莊嚴)으로 지식문의 머리에 올려놓긴 했으나 백제왕조

⁶⁾ 『三國史記』卷12, 武寧王 條; 『梁書』卷3“武帝紀下”; 卷54“諸夷傳·百濟” 참조.

⁷⁾ 成周鐸, 1991, 「武寧王陵 出土 誌石에 關한 研究」, 『무령왕릉의 연구현황과 제문제』, 公州大學校 百濟文化研究所, 114쪽.

의 입지와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지식에는 결국 왕이 62세 되는 523년 5월에 돌아가셔서 빈전에서 빈장을 치렀다가 27개월 후인 525년 8월에 길일을 택하여 정식으로 대묘에 안장하였다고 보여 진다.⁸⁾ 말미의 “立志如左” 다음 행에는 1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분명치 않아 이론이 분분하다. 앞으로 보다 명쾌한 선견이 나와 주기를 기대하는 부분이다.

이 지식의 음(陰, 뒷면)은 소위 방위도 또는 능역도(陵域圖)라고 할 수 있는데 음각선으로 테를 두르고 그 선에 걸쳐 십간십이지(十干十二支)를 방위별로 음각하였고 서쪽의 한 변은 간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 즉 “신(申)·경(庚)·유(酉)·신(辛)·술(戌)”의 다섯 글자가 빠져 있는 셈이 된다.

또 하나의 지식인 왕비의 지식도 석질은 동일하며, 가로 41.5cm, 세로 35.2cm, 두께 4.7cm 이다. 역시 왕의 지식과 같이 먼저 작성되었던 왕비지식의 음에서 봤을 때 중앙 약간 위쪽에 지름 1.1cm의 구멍이 나있다. 발견 당시 동서로 나란히 놓였던 2매의 지식은 원래 상하로 포개져 있었고 이 구멍은 발견 당시 90여 개의 오수전(五銖錢)을 펜 끈으로 같이 묶은 때문이며 방위표 중 서쪽이 없는 것은 지신에게 서쪽 땅을 묘지(墓地)로 매입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⁹⁾ 나아가 두 지식은 원래는 포개져 있었다는 것이다. 양음은 서로 상하의 방향이 바뀌어서 음각되었다. 지식의 양(陽)에는 41자의 명문을 음각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丙午年十二月百濟國王太妃壽終居喪在酉地
己酉年二月癸未朔十二日甲午改葬還大墓立志如左

해석하면,

<병오년(526) 12월 백제 국왕의 대비(太妃)가 목숨을 거두어 유지(酉地)에서 상을 치렀다. 기유년(529) 2월 계미 초하루 12일 갑오에 개장하여 대묘에 옮기고 다음과 같이 묘지를 세웠다.>

왕비의 지식은 합장할 때 이전 지식 2매 중 소위 매지권(買地券)의 비어있

⁸⁾ 고구려와 같이 백제가 3년상을 치렀음은 『三國志』를 비롯한 喪葬制를 기록한 中國典籍에서 다수 발견할 수 있다. 『魏書』東夷傳 第30, 百濟 條 참조.

⁹⁾ 白須淨眞, 2007,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무령왕) · 왕비 합장묘의 묘권(墓券·매지권) · 묘지석(墓誌石)에 관한 한 제언」, 『권영필교수정년퇴임논총』.

는 뒷면을 이용하여 추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왕비 지석 음(陰)의 내용은 무령왕의 지석과 함께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매지권문(買地券文)에 해당되는 것으로 총 6행 58자의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錢一萬文 右一件

乙巳年八月十二日寧東大將軍百濟斯麻王以前件錢(詢?,訟?,聽?)

土王土伯土父母上下衆官二千石買申地爲墓故立券爲明不從律令

위의 해석은,

<돈 1만 문(文) 이상 1건(件) 을사년(525) 8월 12일에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은 상기의 금액으로 토왕(土王)·토백(土伯)·토부모(土父母) 및 상하 봉록2천석의 관리에게 보고하고, 신지(申地: 서남서 방향)의 토지를 사서 무덤을 만들고 (지)권을 써서 밝히니 부종(不從) 율령(律令)이라.>

필자는 이 해석문에서 우선 “부종율령” 부분은 원문 그대로 두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분석하려한다. 이 명문은 무령왕 지석과 같은 날짜를 기록함으로써 왕비의 지석문보다 앞선 무령왕 지석과 함께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무령왕릉 지석에서는 명문상에 “입지여좌(立志如左)”라는 문구의 “지(志)”자 또한 “지(誌)”와 통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성시 묘지로서도, 역시 왕비의 지석음에 있는 매지권문에서도 “입권위명(立券爲明)”이라 하여 매지권임 또한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 묘지와 매지권 둘 다 명명될 수 있는 소지를 보이고 있다. 지석의 내용이 왕호와 왕의 향수(享壽), 왕 및 왕비의 봉어, 안장에 관한 연월일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비교적 간략하여 무령왕릉 지석은 순수한 묘지(墓誌)로서 볼 것이 아니라 매지권(買地券)에 종속된 것이 아닌가하는 이견으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서 필자는 다음 장에서 그 명칭과 개념에 대한 정리를 시도하였다. 무령왕릉출토품은 우리나라에서 지석과 매지권으로서는 통일신라시기까지 국내 발견 최초로 기록된다. 고려시대에는 오석(烏石) 혹은 짐판암계의 장방형(長方形)석판을 사용한 예가 많고 조선시대에는 자기로 된 도판도 출현하게 된다.

Ⅲ. 中國 賣地券의 用例

1. 매지권의 연원

본래 지식의 유래는 중국 동한(東漢)시기에 기원하여 삼국시대 위나라에서 역대 황릉을 세울 때 지나친 노동력과 물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이전시기 유행했던 석실·비석·석개·석수 등 돌로 된 장식물들을 금지하고 비석 대신에 지석을 묻은 데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지석이 매장형으로 출현하는 즈음, 서한 이전 부장용 명기(明器)의 하나인 器誌(遺策, 物疏)와 같은 것들은 서한시기에는 고지책(告地策)이란 형태로 그 시대적 유행을 볼 수 있는데, 동한시기가 되면 고지책에 기록된 문구와 동한시기 매장용 지식으로 제작된 지권의 명문이 공통성을 보여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이후 고지책의 유행은 지권(地券)에 그 명분을 넘겨주고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지권은 동한시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명·청에 이르기까지 줄곧 나타난다. 동한시기의 지권은 주로 고대 간책(簡策)의 형태를 모방한 것으로 길쭉한 연판이나 옥판, 도편 위에 새겨진 경우가 많고, 삼국에서 서진(西晉)시기가 되면 전석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 그런데 남조에 이르러 돌을 사용한 예가 발견되고 그 형태나 크기가 지식과 유사해지면서 심지어는 뚜껑까지 갖춰진 것도 출현하는데 이런 특징은 명·청대에까지 지속되고 있다. 물론 나무나 종이를 사용한 것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금까지 보존되어 발견된 예는 많지 않다.¹⁰⁾

무덤의 부장품 중에는 진묘(鎭墓)와 벽사(辟邪)의 기능을 가진 물건들을 부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악귀를 물리치고 묘주인의 안녕과 죽은 자 뿐 아니라 산자에게도 해가 미치지 않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권도 그 내용이 단순한 묘지문인 것이 있는가 하면 진묘문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매지문을 포함하는 경우, 또 진묘문과 매지문 양자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매지권은 “지권”, “묘권(墓券)” 또는 “총권(塚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엄격하게 말하면 매지의 성격을 가진 지권, 묘권 또는 총권이라 해야 할 것이다. 매지권은 매지첩(買地牒) 또는 매산권(買山券)이라고도 하는데, 묘지를 조영할 때 통용하는 화폐·고전(古錢)·지전(紙錢) 등을 함께 넣고 그 돈

¹⁰⁾ 端方, 『陶齋藏石記』; 劉承幹, 『希古樓金石萃編』; 羅振玉, 『貞松堂集古遺文』; 『蒿裏遺珍』; 1918年, 『地券徵存』; 2001, 『洪亮吉集』第五冊, 中華書局, 2312쪽.

으로 지신(地神)에게 묘지를 매입하는 형식으로 문서를 만들어 전(塹)·석(石)·도자(陶磁) 등에 새겨 넣은 일종의 토지 매매계약서라고 이해할 수 있다. 소위 매지권은 지하에 있는 귀신이나 토지신령에게 죽은 자가 얼마간의 대가를 지불하고서 그의 소유로 인정받아 그 땅에 매장하는데 있어 죽은 자를 침범하지 않게 함과 동시에 산자에게는 복을 비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지하에 매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매지권은 엄격하게 말해 인간사회에서의 계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신적인 세계와의 교역을 의미한다.

동한대의 지권을 보면 그 성격에 따라 크게 현실생활에서의 토지매매문서와 같이 묘주를 위한 매지권(買地券)의 성격인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도교방사(方士)가 산자와 죽은 자를 위한 내용으로 충만한 진묘권(鎮墓券)의 성격을 띤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매지권의 출현과 사용의 배경에는 사회의 발전에 따른 토지사유제와 토지매매의 성행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보인다.

일찍이 매지권에 대한 그 연원이나 분류 등에 관한 언급과 논고가 문집이나 주해(註解) 등 다양한 형태로 전해지고 진행되어 왔다. 그중 가장 먼저 羅振玉은 지권에 대해 매지권과 진묘권의 2가지로 분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¹¹⁾ 史樹青선생은 실재하는 매지의 내용을 담은 지권과 미신용의 지권으로 대별하였다.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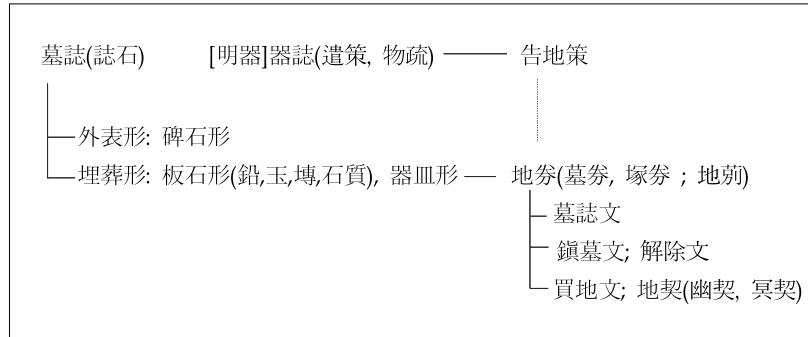
1982년 吳天穎은 한대의 모든 매지권은 명기(明器)에 속한다¹³⁾고 하면서 甲과 乙의 두가지 형식으로 나누었는데 소위 甲型은 일반적으로 연권(鉛券)이 대부분이고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실제 토지매매문서를 모방한 것으로 진실성이 강하고 사료로서 가치가 높은 것이며, 乙型은 만기(晩期) 매지권에 나타나는 것으로 그 권문은 천편일률적이며 미신적 색채가 농후한 것으로 분류하였다.¹⁴⁾

11) 羅振玉, 『蒿裏遺珍』“以傳世諸券考之, 殆有二種: 一爲買之於人, 如建初、建寧二券是也; 一爲買之於鬼神, 則術家假托之詞”; 「鉛券」, 『貞松堂集古遺文』卷一五, “所錄鉛券七種, 分爲買地券與鎮墓券兩類: ‘買之於人’者視爲土地買賣文書, 稱爲‘地券’; ‘買之於鬼神的明器, 稱爲‘鎮墓券’”. 이 외에도 方詩銘, 「從徐勝買地券論漢代“地券”的鑒別」, 『文物』1975年 第3期; 「再論“地券”的鑒別」, 『文物』1979年8期가 있다.

12) 史樹青, 「晉周芳命妻潘氏衣物券考釋」, 『考古通訊』1956年 第2期

13) 1973년 李壽岡도 같은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李壽岡, 「也談“地券”的鑒別」, 『文物』1973年 第7期

14) 吳天穎, 「漢代買地券考」, 『考古學報』1982年 第1期



도1. 買地券의 概念整理圖

지금까지 알려진 몇몇 서한대의 매지권과 동한대의 이른 매지권 몇 예는 그 진위에 이론이 분분하고 연대고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⁵⁷⁾ 아래는 이를 제외하고 비교적 전문이 알려진 것을 중심으로 연대순으로 그 권문을 함께 수록하였다.¹⁶⁷⁾

① 建初六年(81年)武孟子買地玉券¹⁵⁷⁾

“建初六年十一月十六日乙酉 武孟子男靡嬰買馬熙宜 朱大弟少卿

157) ①日本書道博物館藏 西漢 建元元年(公元前140年)王興圭買地鉛券 권문:“建元元年夏五月朔廿二日乙巳, 武陽太守大邑榮陽邑朱忠, 有田在黑石灘, 田二百町, 賣於本邑王興圭爲有。衆人李文信。買錢二萬五千五百。其當時交評。東比王忠交, 西比朱文忠, 北比王之祥, 南比大道。亦後各無言其田。王興圭業。田內有男死者爲奴, 有女死者爲婢。其日同共人, 沽酒各半。”(仁井田升, 1980年, 『中國法制史研究(土地法·取引法)』, 東京大學出版會, 335쪽); 吳天穎, 앞의 책; 張傳璽主編, 1995年, 『中國曆代契約會編考釋』, 北京大學出版社, 58쪽. ②建元三年(公元前138年)宏光□□買地磚券 권문:“建元三年二月廿一日甲□, 宏光□□買地一丘, 雲山之陽, 東極龜坎, 西極玄壇, 南極崗頭, 北極淤□。值錢三千貫, 當時付畢, 天地爲證, 五行爲任。張執”(仁井田升, 앞의 책, 425쪽); 張傳璽, 앞의 책, 59쪽. ③黃龍元年(公元前49年)諸葛敬買地券(『小校經閣金文拓本』卷一三): 方詩銘, 앞의 책. ④山東博物館藏 東漢建武中元元年(56年)徐勝買地鉛券: 葉昌熾, 『買地劄』, 『語石』卷五; 見魯波, 『漢代徐勝買地鉛券簡介』, 『文物』1972年 第5期; 方詩銘, 앞의 책 참조.

167) 개별 참고문헌 외에 다음을 참조하였다. 殷蓀 主編, 1998, 『中國磚銘』, 江蘇美術出版社; 李森 編撰, 1990, 『中國古代磚文』, 知識出版社; 黃景春, 2004, 『早期買地券·鎮墓文整理與研究』, 華東師大博士論文.

17) 端方, 『陶齋藏石記』卷一: 羅振玉, 『蒿裏遺珍』; 劉承幹, 『希古樓餘石萃編』卷六; 張傳璽, 『中國曆代契約會編考釋』, 47쪽; 北京圖書館金石組編, 1989, 『北京圖書館藏中國曆代石刻拓本彙編』第一冊, 中州古籍出版社, 28쪽; 吳天穎, 『漢代買地券考』; 謝承仁 主編, 1997, 『楊守敬集』第8冊, 湖北人民出版社, 998쪽; 張傳璽, 1982, 『中國古代契約形式的源和流』, 『文史』第16, 中華書局, 21~34쪽.

塚田 南廣九十四步 西長六十八步 北廣六十五 東長七十九步 爲田廿三
畝奇百六十四步 直錢十萬二千 東陳田比介北西南朱少比介 時知券約趙
滿 何非 沽酒各半”

이 매지권은 비교적 실재하는 토지매매문서(土地買賣文書)에 가깝고 미
신적 색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그런데 진묘문(鎭墓文)은 동한묘에서 출토한 진묘병(鎭墓瓶)과 같은 도
제(陶製) 명기에도 나타난다. 이 매지권보다 이른 시기인 鹹陽教育學院東漢
二號墓에서 출토한 明帝永平三年(60年)朱書鎭墓陶瓶文이 있어 주목된다.¹⁸⁾

② 元嘉元年(151年)袁孝劉鎭墓券¹⁹⁾

“元嘉元年十月十一日 □□袁孝劉塚 如律令”

16자만이 보이고 있다.

③ 日本 書道博物館藏 延熹四年(161年)鍾仲遊妻鎭墓券²⁰⁾

“延熹四年九月丙辰朔卅日乙酉直閉 黃帝告丘丞墓伯地下二千石
墓左墓右主墓獄史墓門亭長 莫不皆在 今平陰偃人鄉萇富裏鍾仲遊妻薄
命蚤死 今來下葬 自買萬世塚田 賈直九萬九千 錢即日畢 四角立封中央
明堂 皆有尺六桃卷錢布鈿人 時證知者先□曾王父母□□氏知也 自令以
後 不得幹□(擾)生人 有天帝教 如律令”

이 매지권에 대해 羅振玉은 전형적인 진묘권이라 하였고, 吳天穎은 최고
(最古)의 乙型 매지권으로 분류하였다. 그런데 이 진묘권도 “賈直九萬九千
錢即日畢”라 하여 매지문을 포함하고 있다.

④ 建寧元年(168)馬茆磚銘(一)²¹⁾

“兄弟九人,從山公買山一丘於五風裏 葬父馬衛將 直錢六十萬 即日
交畢 建寧元年正月合茆大吉 左 有私約者當律令“

18) 鹹陽市文物考古研究所, 『鹹陽教育學院漢墓清理簡報』: 劉衛鵬, 『漢永平三年朱書陶瓶考釋』:
2000, 『文物考古論集——鹹陽文物考古研究所成立十周年紀念』, 三秦出版社, 193~217쪽.

19) 池田溫, 1981, 『中國曆代墓券略考』, 『東洋文化研究所紀要』第86號: 王育成, 『考古所見道教簡牘
考述』, 『考古學報』2003年 第4期

20) 『貞松堂集古遺文』卷一五: 仁井田升, 앞의 책, 449쪽: 『羅雪堂先生全集』第13冊, 1968, 文華出版
公司(台北), 5227~5229쪽.

21) 殷葆, 앞의 책, 199쪽.

⑤ 建寧元年(168)馬勃磚銘(二)²²⁾

“兄弟九人,從山公買山一丘於五風裏 葬父馬衛將 直錢六十萬 即日交畢 分置券一 合茆大吉 立右 建寧元年二月朔 有私約者當律令”

⑥ 建寧二年(169年)王末卿買地鉛券²³⁾

“建寧二年八月庚午朔廿五日甲午 河內懷男子王末卿 從河南河南街郵部男子袁叔威買阜門亭部什三陌西袁田三畝 畝價錢三千一百 並直九千三百 錢即日畢 時約者袁叔威 沽酒各半 即日丹書鐵券爲約”

⑦ 建寧四年(171年)孫成買地鉛券²⁴⁾

“建寧四年九月戊午朔廿八日乙酉 左駿廐官大奴孫成從雒陽男子張伯始賣所名有廣德部羅陌田一町 賈錢萬五千 錢即日畢 田東比張長卿 南比許仲異 西盡大道 北比張伯始 根生土著毛物 皆屬孫成 田中若有屍死 男即當爲奴 女即當爲婢 皆當爲孫成趨走給使 田東西南北以大石爲界 時旁人樊永張義孫龍異姓樊元祖皆知券約 沽酒各半”

⑧ 熹平二年(173年)張叔敬瓦缶朱書鎮墓文²⁵⁾

“熹平二年十二月乙巳朔十六日庚申 天帝使者告張氏之家三丘五墓 墓左墓右中央墓主塚丞塚令主塚司令魂門亭長塚中遊徼等 敢告移丘丞墓柄地下二千石東塚侯西塚伯地下擊植卿耗裏伍長等 今日吉良 非用他故 但以死人張叔敬薄命蚤死 當來下歸丘墓 黃神生五嶽 主死人錄 召魂召魄 主死人籍 生人築高台 死人歸 深自埋 眉須以落 下爲土灰 今故上複除之藥 欲令後世無有死者 上黨人參九枚 欲持代生人 鉛人持代死人 黃豆瓜子 死人持給地下賦 立制牡厲 辟除土咎 欲令禍殃不行 傳到 約束地吏 勿復煩擾張氏之家 急急如律令”

⑨ 日本 書道博物館藏 光和元年(178年)曹仲成買地鉛券²⁶⁾

“光和元年十二月丙午朔十五日 平陰都鄉市南裏曹仲成 從同縣男

²²⁾ 殷葆, 앞의 책, 201쪽.

²³⁾ 『貞松堂集古遺文』卷一五: 張傳璽, 『中國曆代契約會編考釋』, 47쪽.

²⁴⁾ 羅振玉, 『芒洛塚墓遺文續編』卷上: 張傳璽, 앞의 책, 50쪽.

²⁵⁾ 1935년 山西에서 출토한 것으로 알려진다. 郭沫若, 『由王謝墓志的出土論到蘭亭序的眞偽』, 『文物』1965年 第6期. 郭沫若, 1954, 『申述一下關於殷代人殉的問題』, 『奴隸制時代』, 人民出版社 94쪽. 陳直, 『漢初平四年王氏朱書陶瓶考釋』, 『考古與文物』1981年 第4期.

²⁶⁾ 仁井田升, 앞의 책, 419쪽; 張傳璽, 앞의 책, 51쪽.

子陳胡奴買長穀亭部馬領佰北塚田六畝 畝千五百 並直九千 錢即日畢
田東比胡奴 北比胡奴 西比胡奴 南盡松道 四比之內 根生伏財物一錢以
上 皆屬仲成 田中有伏屍 既□男當作奴 女當作婢 皆當爲仲成給使 時旁
人賈劉皆知券約 他如天帝律令”

이 매지권과 그 내용이 비교되는 것으로 山東省博物館藏 建武中元元年
東漢徐勝買地鉛券이 있는데, 실제로 사용한 매지권으로 말하고 있는 이도 있
다.²⁷⁷ 그 권문은 다음과 같다:

“建武中元元年丙辰四月甲午朔廿八日乙酉 廣陽太守官大奴徐勝
從武邑男子高紀成 買所名黑石潭部羅佰田一町 買錢二萬五千 錢即日畢
田東比皇甫忠 南比孫仲信 西比張淮 北比大道 根生土著毛物 皆屬徐勝
田中若有屍死 男卽爲奴 女卽爲婢 皆當徐勝給使 時旁人薑同 許義皆知
券約 沽酒各半”

⑩ 光和二年(179年)王當墓買地鉛券²⁸⁷

“光和二年十月辛未朔三日癸酉 告墓上墓下中央主士 敢告墓伯魂
門亭長墓主墓皇墓□ 青骨死人王當弟使儉及父元興等 從河南□□左仲
敬子孫等 買穀郊亭部三陌西袁田十畝 以爲宅 賈直萬錢 即日畢 田有丈
尺 券書明白 故立四角封界 界至九天上 九地下 死人歸蒿裏地下 □□何
□姓□□□佑富貴 利子孫 王當當弟使儉及父元興等 當來(入)藏 無得勞
苦苛止易 勿繇使 無責生人父母兄弟妻子家室 生人無責 各令死者無適
負 卽欲有所爲 等焦大豆生鉛券華榮雞子之鳴 乃與□神相聽 何以爲真
鉛券尺六爲真 千秋萬歲 後無死者 如律令 券成 田本曹奉祖田 賣與左仲
敬等; 仲敬轉賣王當當弟使儉父元興 約文□□ 時知黃唯留登勝”

이것은 甲乙型분류에서 甲型에서 乙型으로의 과도기적 형식으로 분류된
바 있는 매지권이다.

⑪ 亳州市博物館藏 光和六年(183년)戴子起買地券

“光和六年十月戊寅朔卅日丁未 都鄉戴子起自有父世一丘一頃田
南至海北至陸東自西至千上半天下入淵 子起□知之子起薄命來歸土 十
月卅日爲子起買塚田萬三百 申告塚皂丘丞墓伯□□伯使子起來無得□留
止 子起食地下米隨下禮子起食地下□隨地下俗 墓王魂神無責子起妻子

²⁷⁷ 劉黎明, 1993 『契約·神裁·打賭』, 四川人民出版社, 193쪽.

²⁸⁷ 洛陽博物館, '洛陽東漢光和二年王當墓發掘簡報', 『文物』1980年第6期 張傳璽, 앞의 책, 52쪽.

兄弟父母 欲責□□□烏白頭馬生角乃與神 何以爲信尺六桃券丹□□爲信
時鄉裏丁福沽酒各半時正南使者丁子與神約萬歲不更 如律令”

이는 1970년 亳縣 城父鄉에서 출토한 것으로 연질(鉛質)의 길쭉하고 얇은 판상(板狀)이며 잔존 길이41cm, 너비3.7~4cm, 두께0.25~0.3cm이다. 글자 위에는 주사(朱砂)가 칠해져있고 예서체(隸書體)의 4행으로 부식과 마모로 인해 판독가능한 문자는 179개 정도이다.

⑫ 日本 書道博物館藏 光和七年(184年)樊利家買地鉛券²⁹⁾

“光和七年九月癸酉朔六日戊寅 平陰男子樊利家從雒陽男子杜程子子弟口買石梁亭部桓千東比是陌北田五畝 畝三千並直萬五千 錢卽日(畢) 田中根土著 上至天下至黃 皆□□並 田南盡陌 北東自比譚子 西比羽林孟□ 若一旦田爲吏民秦胡所名有 言哥子自當解之 時旁人杜子陵李季盛沽酒各半 錢千無五十”

⑬ 中平五年(188年)房桃枝買地鉛券³⁰⁾

“中平五年三月壬午朔七日戊午 雒陽大女房桃枝 從同縣大女趙敬買廣德亭部羅西造步兵道東塚下餘地一畝 直錢三千 錢卽畢 田中有伏屍男爲奴女爲婢 田東西南比舊□ 北比樊漢昌 時旁人樊漢昌 王阿順皆知券約 沽各半 錢千無五十”

⑭ 西安和平門外四號漢墓所出初平四年(193年)王氏陶瓶 朱書鎮墓文³¹⁾

“初平四年十二月己卯朔十八日丙申 直危 天帝使者謹爲王氏之塚後死黃母 當歸舊閭 茲告丘丞莫伯地下二千石蒿裏君莫黃莫主莫故夫人 決曹尚書令王氏塚中先人 無驚無恐 安隱如故 今後曾財益口 千秋萬歲 無有央咎 謹奉黃金千斤兩 用填塚門 地下死籍削除 文他央咎 轉要道中人 和以五石之精 安塚莫 利子孫 故以神瓶震郭門 如律令”

²⁹⁾ 『貞松堂集古遺文』卷一五

³⁰⁾ 주)26.

³¹⁾ 唐金裕, 『漢初平四年王氏朱書陶瓶』, 『文物』1980年 第1期 陳直, 『漢初平四年王氏朱書陶瓶考釋』, 『考古與文物』1981年 第4期 吳榮曾, 『鎮墓文中所見到的東漢道巫關係』, 『文物』1981年 第3期

⑮ 阜陽市博物館藏 東漢鉛質鎮墓券

“延至死時家室甚痛 帳帷宿之不敢失時 趨走荀問良日□□ 東西迎
工南北迎醫 錢財盡朔非有狐疑 元延女自命祿盡 天年逢災宗疾悲痛傷惻
處生癡人爲元延解補 鏡蔽奩疏比衣被禪覆 袴袍長襦至有城郭棘室 狗豬
所有皆具如生人之送 元延甚質復未何來 前年枉死延至今茲 家室悲傷哭
無解休 生人日夜蒿死人日□ 生人行地上死人行地下 隋倪離署誰當坐者
墓伯丘丞案致比伍 自今以後無得復來 女欲復來持女卷齒 須烏如白大□
□□ 千秋萬歲無復相索 玉帝爲之自有部介 他如天帝符卷 律令”

이 진묘권은 1970년 12월 陽縣 九裏 溝前馬莊의 동한(東漢) 후기로 추정되는 전실묘(磚室墓)에서 출토했다. 모서리가 날아갔지만 잔존 길이 39.5cm, 너비 4.7~4.8cm이다. 예서체(隸書體)의 5행 197자가 새겨졌다.

그런데 이 묘권은 매지문으로서의 문구가 보이지 않고 진묘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그 명명도 진묘권이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말미에는 무령왕릉 매지권과 같이 전후 다른 수사없이 “律令”으로 끝을 맺고 있어 주목된다.

2. 매지권의 형식

그러면 여기서는 매지권과 유사한 형식이 나타나는 서한의 고지책을 잠깐 짚어볼 필요가 있다. 江蘇邗江胡場五號漢墓에서는 목둑(木牘)의 고지책이 출토하였는데, 보고서에서는 “文告牘”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卅七年十二月丙子朔辛卯 廣陵宮司空長前丞□敢告土主 廣陵石裏
男子王奉世有獄事 事已 復故郡鄉裏 遣自致 移指穴 卅八年獄計 承書從事 如律令”

이것은 말미에 “如律令”이 있어 주목된다. 보고서에 의하면 卅七年은 公元前71年으로 추정하고 있다.²⁷⁾

현재 알려진 가장 늦은 서한 시기의 고지책은 胡場漢墓 출토의 漢宣帝本始三年(公元前71年)王奉世告地策이며 가장 이른 시기의 매지권은 東漢建初六年(公元81年)武孟子買地券이다. 이는 시기적으로 동한의 매지권이 서한의 고지책을 계승하고 있는 것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전국(戰國)시기에서 서한전기에 해당하는 무덤에서 보이는 견책

²⁷⁾揚州博物館·邗江縣圖書館,『江蘇邗江胡場五號漢墓』,『文物』1981年 第11期 黃盛璋,『雲夢龍崗六號秦墓木牘與告地策』,『中國文物報』1996年 7月14日 第三版; 1996,『揭開告地策諸謎——從雲夢龍崗秦墓、邗江胡場漢墓木牘談起』,『故宮文物月刊』(台北)第14卷 第8期 劉昭瑞,『記兩件出土的刑獄木牘』,『古文字研究』第24輯.

(遣策), 물소(物疏)를 포함해서 서한 후기까지 나타난 고지책은 모두 초국(楚國)의 본거지인 주로 湖北 江陵, 湖南 長沙, 江蘇 북부에서, 동한 진묘권과 매지권은 長安과 洛陽을 중심으로 유행했으며 출토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이는 고지책과 지권의 시기적으로나 기능과 내함 면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연원은 결국 전국시대 초국의 문화적 전통과 민간 신앙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³³⁷⁾

사실상 초국의 문화를 고스란히 이어받은 남조의 묘제나 매지권에 대한 자료는 숫적으로 또 연구의 집대성 면에서 아직까지 전모를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최근까지 무령왕릉 조성시기의 문화적 범주에 포함되는 남조의 매지권도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는 권문이 알려진 육조시기에 해당하는 매지권 몇 예를 수록하였다.³³⁸⁾

① 東吳赤烏八年(245년)鉛質買地券

“赤烏八年二月丁未□六日 王子司郎中蕭整從蕪湖西鄉土主葉啓買地三頃五十畝 賈錢三百五十萬即日交畢 鄉尉蔣玖裏帥謝達證知啓賣 證知整買 先相可這以令”

중국 남방에서 입조한 동오(東吳)는 한대 문화를 고스란히 받으면서도 교유의 전통을 이어가면서 이후 이어지는 유려한 남조문화의 근원지이다. 赤烏八年 東吳鉛質買地券 역시 길쭉한 판상형을 띠고 있으며 길이 27.7cm, 너비4.1cm, 두께0.3cm의 양면에 새겨진 각면마다 3행으로 모두 69자가 새겨져 있다.

이 권문에서는 율령과 같은 독립어구가 아닌 문장 끝에 “令”이 보이고 있다.

② 東吳神鳳元年(252)買塚城記³³⁹⁾

“會稽亭候並領水軍綏遠將軍 從土公買塚城一丘 東南極鳳凰山郭

³³⁷⁾ 劉屹, 2005, 『敬天與崇道——中古經教道教形成的思想史背景』中華書局, 17~42쪽, (表1、漢魏六朝告墓、買地、鎮墓材料一覽表): 黃盛璋, 『江陵高台漢墓新出“告地策”、“遣策”與相關制度發覆』, 『江漢考古』1994年 第1期 洪石, 『東周至晉代墓所出物疏簡牘及其相關問題』, 『考古』2001年 第9期 彭浩, 1996, 『戰國時期的遣策』, 『簡帛研究』第2輯, 法律出版社, 48~55쪽; 米如田, 『“遣策”考辨』, 『華夏考古』1991年 第3期

³³⁸⁾ 개별 참고문헌 외에 다음을 참조하였다. 黃增慶·周安民, 1964, 『桂林發見南齊墓』, 『考古』1964-6; 羅宗真, 1981, 『南京新出土梁代墓誌評述』, 『文物』1981-12; 池田溫, 1981, 『中國歷代墓卷略考』, 『東洋文化研究所紀要』86; 廣西壯族自治區文物工作隊, 1983, 『廣西壯族自治區融安縣南朝墓』, 『考古』1983-9; 湖南省博物館, 1984, 『湖南資興晉南朝墓』, 『考古學報』1984-33; 南京市博物館, 1992, 『南京市博物館藏六朝墓誌』, 『東南文化』1992-5; 王志高·董蘆, 『六朝買地券綜述』, 『東南文化』1996-2.

³³⁹⁾ 中國國家圖書館藏拓, 善拓583-133.

西極湘 北極□□ 直錢八百萬 即日交畢 日月爲證 四時爲馮 有私約者當律令 大吳神鳳元年壬申三月□□大吉“

③ 東吳五鳳元年(254년)買地券³⁶⁷⁾

“五鳳元年十月十八日 大男九江黃甫 年十八 今於莫府後南邊 起塚宅 從天買地 從地買塚 雇錢三百 東至田庫 西至□□ 南至□□ 北至壬癸 若有爭地 當詣天帝 若有爭宅 當詣□□ 如天帝律令“

④ 當塗縣文物管理所藏 東吳鳳凰三年(274년)鉛質買地券

“吳故夷道督奮威將軍諸暨都鄉侯會稽孟 息男壹爲男子周壽所有丹陽蕪湖馬頭山塚地一丘 東出大道西極山南北左右各廣五十丈 直錢五十萬即日交畢 關連橋刺奸齊謹破券以解是爲明 鳳凰三年八月十九日對共破券”

1985년 當塗縣 龍山橋鄉 雙梅村에서 발견된 鳳凰三年(274년)鉛質買地券이 있는데, 길이15.8cm, 너비4.3cm이며 모두 93자가 기록되어 있다. 또 1978년 南陵縣 麻橋鄉 東風村 六朝磚室墓 (M 2) 출토의 南陵縣文物管理所藏 地券도 보고되어 있다.

⑤ 晉太康五年(284年)楊紹買地券³⁷⁷⁾

“大男楊紹從土公買塚地一丘 東極闕澤 西極黃滕 南極山背 北極於湖 直錢四百萬 即日交畢 日月爲證 四時爲任 太康五年九月廿九日對共破券 民有私約如律令”

이 매지권은 《楊紹買地磚》,《楊紹買地券》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⑥ 東晉鹹康四年(338년)東晉買地券³⁸⁷⁾

“□鹹康四年二月□□朔四日□□□□□從天買地 從地買宅 東極甲乙 南極丙丁 西極庚辛 北極壬癸 中央戊己 上極天 下極泉 直錢二百□ 即日交畢 若有爭地 當旨天帝 若有爭宅 當旨土伯 □□□東王公西王母 □如

³⁶⁷⁾ 殷葆, 1998, 『中國磚銘』, 江蘇美術出版社, 圖版上冊, 331쪽.

³⁷⁷⁾ 國家圖書館善本金石組編, 2003 『先秦漢魏晉南北朝石刻文獻全編』, 北京圖書館出版社, 北京圖書館藏(石印64開本) 索書號 古520·04-925-3: 範文瀾, 1958, 『文心雕龍注』, 人民文學出版社, 486쪽; 錢大昕, 2000, 『楊紹買地券』, 『十駕齋養新錄』卷一五, 江蘇古籍出版社, 324쪽.

³⁸⁷⁾ 殷葆, 앞의 책, 450쪽.

天帝律令“

⑦ 湖南長沙出土 宋元嘉十年(433) 徐副買地石券³⁹⁾

“新出太上老君符敕天一 地二 ……丘丞 墓伯 塚中二千石 左右塚侯
……安都丞 武夷王 道上遊羅將軍 道左將軍 道右將軍三道將軍“

⑧ 宋泰始六年(470年)歐陽景熙買地券

“宋泰始六年十一月九日 始安郡始安縣都鄉都唐裏沒故道民歐陽景熙今歸豪裏 亡人以錢萬萬九千九百文 買此塚地 東至青龍南至朱雀西至白虎北至玄武 上至青天下至黃泉四域之內 悉屬死人 即日畢了 時王僑赤松子李定張故分券爲明 如律令”

이는 1938년 桂林市 觀音閣 부근에서 철로공사 도중 출토한 것으로 지금은 그 행방을 알 수 없다. 길이18.2cm, 너비11.6cm, 두께0.5cm로 장방형 활석(滑石)이며 권문은 7행이다.

⑨ 湖北武昌出土 齊永明三年(485) 劉覬磚券⁴⁰⁾

“新出老鬼太上老君符敕天一 地二 ……墓上 下 左 右 中央墓主 丘丞 墓伯 塚中二千石, 左 右墓侯 五墓將軍“

⑩ 齊永明五年(487年)秦僧猛買地券

“齊永明五年太歲丁卯十二月壬子朔九日庚申 湘州始安郡始安縣都鄉都唐裏男民秦僧猛薄命終沒 歸豪裏 今買得本郡縣鄉裏福樂坑□□ 縱廣五畝地立塚一丘 雇錢萬萬九千九百九十文 四域之內生根之物 盡屬死人 即日畢了 時證知李定度張堅固 以錢半百分券爲明 如律令”

이것은 1962년 桂林市 東郊 堯山의 磚室墓에서 출토하였는데 길이17.5cm, 너비11cm, 두께0.5cm로 장방형 활석이며 권문은 7행의 해서체이다.

⑪ 永明五年(487年)黃道丘買地券

“永明五年太歲丁卯八月甲寅初七日庚申 始安郡始安縣都鄉牛馬覃對裏男民黃道丘(薄) 命終沒 歸家裏 今買得本郡縣鄉裏覃坳圍上 縱廣

³⁹⁾ 長沙市文物工作隊, 1982, 『長沙出土南朝徐副買地券』, 『湖南考古輯刊』第一輯, 嶽麓書社.

⁴⁰⁾ 湖北省博物館, 『武漢地區四座南朝紀年墓』, 『考古』1965年 4期 郭沫若, 『由王謝墓志的出土論到蘭亭序的真偽』, 『文物』1965年 6期

五塋地立塚一丘自葬 雇錢萬萬九千九百九十九文 四域之內生根之物 盡屬死人 即日畢了 時證知李定度張堅固 以錢半百分券爲明 如律令”

1980년대 靈川縣 大圩鎮 上橋村(石渠村) 李四成이란 사람이 받을 갈던 중 우연히 발견했는데 길이17.6cm, 너비12cm, 두께0.5cm의 장방형 활석제이며 해서 7행의 권문이 있다.

⑫ 梁天監五年(506年)熊薇買地券

“梁天監五年太歲丙戌十二月癸巳朔四日丙申 始安郡始安縣都鄉牛馬裏女民熊薇 以癸巳年閏月五日醉酒命終 上歸高裏 玄都鬼傳地下女青詔書科律 自軍亂以來 普天下死人皆聽隨生人所在郡縣停邑葬埋 薇命從此始安縣都鄉牛馬九罌裏城 地下先人豪裏父老墓鄉右秩左右塚侯丘丞墓(伯)地下二千石安都丞武夷王 買此塚地 縱廣五十步 立塚自葬 喪屍雇錢萬萬九千九百九十九文 即日畢了 丘墓地下諸神皆聽薇於此 立定塚葬埋不得使左右比居 他姓人神複志此地輒使侵犯 分券永定 知者張堅固李定度 各共爲券 如律令”

이 역시 1980년대 靈川縣 大圩鎮 上橋村(石渠村) 李四成이란 사람이 마을 사람에게서 구입한 것으로 알려진다. 길이29cm, 너비16cm, 두께1.1~1.2cm의 불규칙하나 장방형에 가까운 석제이다. 해서 10행의 권문이 있다.

⑬ 桂林己亥年(519)買地券

“太歲己亥十二月四日齊熙郡覃(潭) 中縣都鄉治下裏覃華薄命沒歸蒿裏 今買宅在本郡騎店裏 縱廣五畝 立塚一丘自葬 雇錢萬萬九千九百九十九文 或之內 生根之物 盡屬死人 即日畢了 時任李定度張堅固以錢半百分券爲明 如律”

1980년 발견된 활석매지권으로 길이18.7cm, 너비12.7cm, 두께2.2cm이다. 남제(南齊)는 “己亥”년이 없어 권문 중의 己亥는 蕭梁 天監十八年(519)으로 추정된다.

⑭ 梁輔國將軍墓志⁴⁷⁾

“□□□輔國將軍濟晉二郡…… □□□本州功曹史齊康太守……氏父 □□本州治中 □□□本州西曹史除天水太守…… □□□陽潘氏父惠宣除

⁴⁷⁾朱國平·王奇志, 『南京西善橋輔國將軍墓誌考』, 『東南文化』1996-2: 章濤·力子, 『南京西善橋南朝墓志質疑——兼述六朝買地券』, 『東南文化』1997年 1期

積射□□除漢□太守 □□射聲校尉輔國將軍濟陰太守郡□郎流宜郡內史
 青州司馬帶□朱 衣直閣將軍鎮蠻護軍晉熙太守□流長水校尉安城王右
 頭司馬春秋□ □有三□於丹陽秣陵長千里□子歲四月廿九日亡今葬江寧
 縣□其年 □月廿四日□於載□□□□塗長松杰□□□妻清河張氏 父□
 帝諱除□陵王□□□越騎校尉除本縣令本郡丞除□南□宋二 郡太守□
 □□□□□年五十一建安王正佐除海安縣令 □□□妻東海徐氏□
 父亮九流驍騎將軍山陽太守 □□子英年十八妻彭城劉氏父道□ □□
 子斌年十六妻東海徐氏父質奉朝清 □□子蠻年十一妻□□武氏父會超
 左衛將軍太子右率越騎刺史豫州刺史黃門郎 □□太妹光妃適清河張□
 □□父□騎將軍鎮蠻護軍□熙太守歷陽太守汝城縣開國男 □□奉朝請
 除本縣縣令□□令 □□□共墓東邊山北□所葬□□州墓北□□徐州墓
 (燾)□□ □□□山嶺直出陳□□南宜出陳□墓至松城□於梁州墓(燾)道
 口 □□□□本縣 □□□□歲庚子八月五日擁州民□□□□子英今
 (汰)建康民□□□□□□□東西南北西□□□□錢 □□九千走卽錢地□
 □二 □□□□□□□共所賣地□地□□有公私志□一付□□子不□ □
 □□□□□□□□凶葬□去來取板橋 大□使通流保無□碍□ □□□□
 □□□□□不能是了王要破□墓 □□□碩嶺長出入□ □□□□□□□
 私□□土三百車山墓還 王葬如故侍立任供送估 □□□□□□□□氏得
 私約不從侯令 □□□□□□□□元子喏□任□……王買地以記”(필자
 채록)

1991년 南京博物院에 의해 南京西善橋부근 남조묘의 발굴에서 수습되
 었다. 명문은 28행이며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으며 탈락와 마모가 심한 편이다.
 무령왕릉과 유사한 “不從侯令”이란 문구가 나타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데
 錄文이 없어 필자가 채록하였다. 이 묘지는 묘지문과 함께 매지문을 담고 있으며
 비교적 장황한 묘지문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무령왕릉과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⑮ 梁普通四年(523年)熊悅買地券

“梁普通四年十二月癸醜朔 始安郡始安縣都鄉牛馬楊田裏沒故女民
 熊悅 歸豪裏 玄都鬼傳地下女青詔書科律 從軍亂以來 普天下死人皆聽
 隨生人所在始安郡縣都鄉覃置寸裏停邑 地下先人萬久墓鄉右秩左右塚
 侯丘丞墓伯 地下二千石安都丞武夷王置此塚地縱橫五畝 於中掘土作葬
 墓悅屍喪傾錢萬九千 塚侯丘丞墓伯地下二千石安都丞武夷王等皆聽悅
 於此地 土塚葬埋不得使左右比居妄志 地分券時 知者張堅固李定度沽酒

宣定 同知紳各半 共爲券誓 如太上老君律令”

이 역시 1980년대 靈川縣 大圩鎮 上橋村(石渠村) 李四成이란 사람이 마을 사람에게서 구입한 것으로 알려진다. 길이15.7cm, 너비6.1cm, 너비1cm의 장방형 활석제이다. 양음 모두 각 6행, 4행의 권문이 새겨져 있다.⁴²⁾

⑩ 梁中大通五年 (533年) 周當界買地券

“中大通五年太歲甲寅三月甲申朔十四日丁酉 老居神符勅道路將軍 禁防 地下二千石豪裏父老丘承墓伯 今日大化復除 道民象郡新安縣都鄉 治下裏 沒故女民周當界醉酒命終 今歸裏豪 置宅在本郡縣鄉裏來會置上 符到部吏營衛皆令如法 敢有志訐 有犯者先誅後奏 嘗安隧□者 使千年 萬歲不得於犯生人 明承奉行 如太上老君律令”

1987년 廣西 鹿寨江口에서 출토한 이 지권은 권문을 양음면에 가장자리를 따라가면서 음각하였다.

상기한 육조시기 매지권에서는 이전 시기에 없었던 새로운 유행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女靑詔書”, “女靑詔書律令”, “女靑律令”과 같은 “律令”의 앞에 조기 도교에서 흔히 나타나는 용어가 부가되는 것이 보이는데, 이는 《女靑鬼律》卷六에 보이는 “丘丞鬼名地令, 墓伯鬼名土下侯, 塚下鬼名二千石.……放縱天下, 羅截四方, 充塞六合, 擅筭五行, 更相署置官府, 列陣出入道從兵馬, 權強殺害無辜, 恣意快心. 寡福之人, 悉逢其苦. 志士學道, 方術厭禳, 符章禁斷, 乃保利貞.”⁴³⁾과 일맥상통하여 주목된다. 이러한 예는 위의 권문 외에도 江蘇徐州出土劉宋元嘉九年(432)王佛女磚券, 湖北武昌宋元嘉十六年(439)簡(?)謙買地券⁴⁴⁾, 廣東始興宋元嘉十九年(442)妳女及泐名石券⁴⁵⁾, 元嘉二十一年(444)□和磚券⁴⁶⁾, 廣東廣州宋元嘉二十七年(450)龔韜石券⁴⁷⁾, 湖南資興梁天監四年(505)磚券⁴⁸⁾, 湖南資興梁普通元年(520)何靖墓磚券⁴⁹⁾이 있다.

42) 莫志東, 「淺析桂林地區出土的南朝買地券及其相關問題」, 『桂林文化』2003年 第3期

43) 『道藏』18冊, 1988年, 文物出版社, 251쪽.

44) 黃義軍等, 「河北鄂州郭家細灣六朝墓」, 『文物』2005年 10期

45) 廖晉雄, 「廣東始興發現南朝買地券」, 『考古』1989年第6期, 566~567쪽

46) 廣東省博物館·香港中文大學文物館, 1985 『廣東出土晉至唐文物』, 香港, 25~26쪽.

47) 廣州市文物考古研究所, 2005, 「廣州市淘金東路中星小學南朝墓發掘報告」, 『羊城考古發現與研究』(一), 北京文物出版社, 141, 146쪽.

48) 湖南省博物館, 「湖南資興晉南朝墓」, 『考古學報』1984年 第3期

49) 앞의 책.

묘지에는 일반적으로 묘주의 성명, 생몰연월일, 출계·관직 등 생시의 행적, 무덤의 방향 등이 기록되어 있고, 진묘권에는 지하신들을 지칭하는 다양한 직함과 주술어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사자와 생인 간의 명백한 구별과 서원을 담은 문구가 등장한다. 남조에 이르러 매지권은 그 형식이 갖춰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생몰연월일 [2]묘주의 성명 [3]묘지의 영역 [4]매매의 대가 교부 사후 묘역 침범자에 대한 처벌 [5]계약을 증명하는 보증인과 입회자의 성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대부분 율령과 같은 말미의 종결어가 보이고 있는 것도 알 수 있다. 이상의 예에서 보면 “律令”, “如律令”이나 “急急如律令”과 같은 “如太上老君律令”와 같은 종결어를 가진 묘지문은 문장속에 과장된 요소 즉 진묘와 관련된 무령왕릉의 매지문에도 보이는 “地下二千石”이나 “土伯”, “墓伯” 등 지하신들을 지칭하는 단어와 같은 것이 보이는 반면, 말미어구가 다른 예에서는 비교적 그 내용이 진실성에 가까운 듯 단조롭다. 그런데 남조의 매지권에는 李定度나 張堅固 같은 보증인 내지 입회자의 성명이 등장하면서 “律令”도 그 앞에 도교적 의미가 가미된 “急急如律令”, “如太上老君律令”과 같은 것으로 변모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무령왕릉의 지석에는 [4]와 [5]번 조항이 빠져있는 셈이며 남조시기에 새롭게 등장한 요소를 배제한 동한대로부터 내려오는 비교적 전통적인 고식의 모습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검증과 문제점

이 장에서는 결론적으로 상기의 내용을 종합하여 “不從律令”에 대한 시의 적절한 이해와 해석을 도모하고자 문제점에 대한 검증작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1. “律令”의 의미

무령왕릉에서 나타난 율령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법률상 용어인 단순한 율령 그 자체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위의 매지권의 연원에서 율령이라 함은 대체적으로 크게 첫째, 제정된 율령과 같이 이행하는 것 둘째, 현대에 공문서(公文書)의 관용구로서 명령대로 집행할 것을 재촉하는 것⁵⁰⁾ 셋째, 민간신앙에서

⁵⁰⁾ 瀧川政次郎, 1931年 初版(1965復刻), 『急急如律令』, 『律令の研究』, 刀江書院, 東京, 72~75쪽

도교에 이르기까지 도가적 전통이 두드러진 주술적 의미의 주문의 하나로서 신적인 존재에게 그 명령대로 집행하기를 부탁하는 것 등으로 그 해석이 제기된 바 있다.⁵¹⁾

매지권문 말미에 나타난 “如律令”이나 “急急如律令”과 같은 용어는, 특히 송대(宋代)의 葉大慶은 《考古質疑》에서 “急急如律令”에 대해 “律은 금하는 것은 하면 안 되고, 令은 명하는 것은 해야 한다. 如律令은 율령을 위반하지 말라는 것이다. 道家의 符咒는 곧 관부문서의 효과를 내기 위함이다.”라고 하였고,⁵²⁾ 《詞源》에서는 “急急如律令”에 대해 설명하면서 현대 공문서에서 자주 보이는 “如律令”혹은 “急急如律令”과 같은 걸어는 즉, 법률명령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 이는 이후 송대(宋代) 공문서 말미의 “符到奉行”과 같으며 나중에 도가의 “咒語”혹은 “符籙文字”로서도 이 문구를 습관적으로 사용하여 귀신에게 부령(符令)대로 령을 집행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⁵³⁾ “如律令”에 대해서 일찍이 王國維는 그 고증에서 “한대에 조서를 내릴 때 “如詔書”라 하기도 하고 “如律令”이라 하기도 하는데 아직 율령으로 갖춰지지 않고 조서로서 정해진 것은 “如詔書”라 쓰고, 이미 율령으로 정해져 조서로써 독촉하는 것을 “如律令”이라 하였다. 여기서 “如”는 “如詔令行事”라 하여 “令”에 따라 집행함을 말한다. “如律令”이라 함은 조서에 한하지 않고 상하(上下)를 막론하고 고지할 수 있는 쓰임새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후 민간의 계약이나 도가적 주술 부(符)에서 이를 이용하였다.”⁵⁴⁾고 하고 있다. 후한대에 토지사유제(土地私有制)가 발달하고 상품화폐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현대 민법상의 “계약 자유”와 유사한 관념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로써 토지매매의 성행에 따른 민간의 토지매매계약에서 쓰이는 “私約如律令”이란 구절과 같은 것도 드물지 않게 보이고 있는 것이다. 위의 《楊紹買地券》은 “民有私約如律令”의 전형적인 예로 보여 진다.⁵⁵⁾ 전거한 매지권 외에 《漢建寧元年(168年)潘延壽買地磚券》:

邢義田, 1987, 「秦漢의 律令學」, 『秦漢史論稿』, 東大圖書公司, 台北, 251쪽, 주16) 참조.

51) 張伯元, 2005, 『出土法律文獻研究』, 商務印書館, 269~271쪽.

52) “概律者, 所以禁其所不得爲; 令者, 所以令其所當爲. 如律令者, 謂如律令不得違也. 道家符咒, 正是效官府文書爲之.” 張伯元, 앞의 책, 271쪽.

53) “漢代公文常以‘如律令’或‘急急如律令’結尾, 意即要求立即按照法律命令辦事, 相當於其後宋代公文書末的‘符到奉行’. 後來的道家咒語或符籙文字也習用此語, 意爲勒令鬼神按符令照辦”

54) “漢時行下詔書, 或曰如詔書, 或曰如律令. 苟一事爲律令所未具而以詔書定之者, 則曰如詔書. 苟爲律令所已定而但以詔書督促之者, 則曰如律令. 如者, 謂如詔令行事也. 如律令一語, 不獨詔書, 凡上告下之文, 皆得用之. 其後民間契約, 道家符咒, 亦皆用之.” (王國維, 1959, 『觀堂集林』第三冊, 中華書局版, 846쪽)

55) “私約如律令”에 관한 자세한 논고는 李顯冬, ‘民有私約如律令’, 『政法論壇』, 2007年 3期 참조.

“有私約者當律令”；《漢光和元年（178年）曹仲成買田鉛券》：“時旁人賈劉皆知券約 □如天帝律令”；《吳神鳳元年（252年）綏遠將軍買地磚券》：“有私約者當律令”；《晉鹹康四年（338年）朱曼妻買地宅石券》：“如天帝律令”과 같은 구절이 보이고 있어 이를 대변해주는 자료가 되고 있다.⁵⁶⁷

南京 西善橋 輔國將軍 墓誌에도 “私約不從侯令”이라 하여 무령왕릉과 같은 “不從”의 구절이 보이고 있어서 주목된다. 단지 “律令”이 아니라 “侯令”이라고 판독하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만약 “侯令”이라면 무령왕릉의 “律令”과는 현격히 다른 것이 된다. “律”과 “令”의 구분이 있어 전자는 “令”의 상위에 있는 것을 선포한 것이 된다. 애초에 이 권문을 판독한 자는 이에 대해 고민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무령왕릉과 같이 “律令”이라고 한다면 말미의 관용구로 해석해야 한다. 그렇게 되더라도 “私約”이라는 문구가 있어 무령왕릉과는 또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무령왕릉 매지권은 율령에 준하는 것으로 선포한 것일까 아니면 다른 뜻일까. 백제에서 당시로서는 이(異)문화인 매지권이란 것을 제작하여 부장하면서 굳이 매지권의 기본형식을 위배하는 문구를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무령왕릉의 “律令”은 “如律令”과 같이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기존 매지권의 형식분석을 보면 매지권문은 하급의 법령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곧 이것은 율령과도 같은 것으로서 율령과 같이 지하세계를 포함한 만방에 선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무령왕릉의 “부종율령”을 율령을 따르지 않는다 또는 율령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매지권문은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되고 만다. 중국과는 다른 백제 고유의 특수성을 굳이 이 문구에서 찾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매지권의 많은 예에서 “私約律令” 또는 “私約如律令”, “私約當律令” 즉 율령의 힘을 빌어서 이 매지권을 정당한 문서로서 유효화시켜야 하는 구절이다.

중국 한대 특히 동한시기에 초기도교의 하나인 태평도(太平道)가 유행하면서 풍수가는 천사(天師)의 주술적 언어와 점술과 같은 행위를 빌어 양택(陽宅)과 음지(陰地)를 구하는 풍습이 널리 퍼지게 된다. 이것은 초기 도교의 특징 중의 하나로서 진묘문(鎮墓文)의 말미에 “如律令”과 같은 용어가 적극 채용되는 결과도 가져오게 되었다. 이후 남조에 이르러 특히 남제(南齊)시기에는 이 “律令”이란 매지권 용어의 앞에 “太上老君”이나 “女青” 등의 도교적 신격(神格)을 나타내는 수식어가 붙게 되어 율령이란 용어는 더욱 다양화 되는 것을

⁵⁶⁷ 張傳璽, 「論中國封建社會土地所有權的法律觀念」, 『北京大學學報』, 1980年 第6期

볼 수 있다.⁵⁷⁾ 진묘문에서의 이런 변화와 함께 풍수학적인 직접적인 증거들도 출현하는데 매지권과 함께 택지의 증표들도 같이 발견되는 것을 보면 당시의 풍습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는 무령왕릉에서도 함께 발견된 매지권 외 십간십이지가 새겨진 또 하나의 지식에 대한 이해를 도와준다.

그 한 예로는 2004년 廣州에서 발견된 남조(南朝) 유송(劉宋)시기 부부합장묘(夫妻合葬墓)로 추정되는 제69호묘에서 비록 당대(唐代)에 이미 도굴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214자의 해서체로 새겨진 남조시기 전형적인 형식의 매지권과 5매의 도부(道符)가 같이 출토하였는데, 4매의 도부는 그 내용이 상세하게 판독되지 않으나 1매에선 방위가 새겨져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 외에도 湖南 徐副墓(433), 湖北 武漢 劉覬墓(485), 湖南 資興 天監 4年墓(505), 湖南 資興 何靖墓(520) 등에서도 도부가 출토한 예가 있다.⁵⁸⁾

2. 誤寫의 가능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律令”은 어느 정도 그 시대에 따른 적절한 의미가 파악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律令”의 앞에 있는 “不從”은 과연 오사(誤寫)의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비록 이미 南京 西善橋 輔國將軍 墓誌에 “私約不從侯令”이라는 구절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논란은 어느 정도 접철되고 있지만 과거 일본인 학자에 의해 “不從”에 대한 오사(誤寫)의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어 필자는 그 서체와 비슷한 시기의 동일한 글자들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필자는 처음 “不從”이란 문구를 접했을 때 “不徙”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고 유심히 살펴보았다. “不徙”라고 한다면 “옮기지 말라”는 뜻으로 비교적 그 해석이 매끄럽고 매지문으로서의 의미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만약 이 글자가 오사라고 한다면 더러도 이상 필자의 “不從”과 “律令”의 해석에 있어 “律令”의 해석은 동일하게 된다. 그런데 각석된 면을 보아서는 다른 글자에 비해서도 비교적 그 각인이 명확하고 애초에 徙자 머리의 3획이 아닌 從자의 2획임이 확실해 보였다. 從은 비록 수(隋)대에 3획의 머리를 가진 글자—그것도 徙의 3획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를 발견할 수 있으나 徙는 2획의 머리를 가진 예는 발견할 수 없었다. 이는 각석하는 자가 분명히 從자를 의식하고 제작한 것이 된

⁵⁷⁾ 阪出祥伸, 2003(6), 「冥界の道教的な神格——“急急如律令”」, 『東洋史研究』, 62-1, 75~96쪽.

⁵⁸⁾ 2004년 9월~12월, 廣州市文物考古研究所報告: 王志高·董廬, 「六朝買地券綜述」, 『東南文化』, 1996-2, 53~55쪽.

다.(도2 참조).⁵⁹⁾

무령왕릉지석에 나타난 글씨는 예서 또는 해서에 가까우며 일정한 법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보이는 백제특유의 부드러움 그리고 물론 남조의 서체와 닮아 있는 것으로 보이면서도 이 시기 이미 남조의 문화를 대폭 수용하고 보다 강건함을 보이는 북위의 서체와도 비교할 수 있다. 도2에서도 魏永平四年(511년)의 銘이 보이는 北魏司馬紹墓誌의 從자가 무령왕릉과 가장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음이 확인된다.

從					徙	
1	2	3	4	5	6	7

1. 漢韓勅碑陰 2. 魏司馬景和妻墓誌 3. 齊宋敬業造像 4. 北魏司馬紹墓誌
5. 隋曹植碑 6. 魏孝文帝弔比干文 7. 魏寇治墓誌

도2. 從과 徙의 集字 比較

그러면 무령왕릉 매지권 명문에서 율령의 앞에 있는 “不從”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이를 검토하기에 앞서 우선 당시 백제의 한문 수준과 그 문화적 배경을 가늠할 수 있도록, 보고된 바 있는 4·5세기대 국내 한문 자료를 검토하였다. 4세기대의 고구려묘지(高句麗墓誌) 등은 당시의 한문수준을 짐작케 하였으나 “不從”과 같은 직접적인 관련을 지을 수 있는 문구가 없어 여기서는 그중 5세기대 개로왕국서(蓋鹵王國書)를 살펴보기로 한다.

개로왕국서⁶⁰⁾는 백제의 개로왕이 중국 북조의 북위(北魏)로 보낸 이 국서로서 북위의 힘을 빌려 고구려를 공격하고자하는 의도가 담겨있고, 당시 백제의 대외관계와 주변국의 정세를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귀중한 사료라고 할 수 있다.

무령왕은 매지권 기록으로 인하여 무령왕은 개로왕(蓋鹵王)8년(462)에 출생하였으며 백제가 웅진성으로 도읍을 옮길 때 14세이고, 왕위에 즉위할 때 40세가 되며 62세에 생을 마감하였다. 무령왕은 어릴 때부터 백제의 가장 어려운 시대를 몸소 체험하였고 백제의 재건을 도모하였다.

⁵⁹⁾ 秦公 輯, 1985, 『碑別字新編』, 文物出版社, 157~158쪽.

⁶⁰⁾ 十八年 遣使朝魏 上表曰.....良由高句麗即被 未及卜征 今若不從詔旨 則輒之來謀.....王以麗人屢犯邊鄙 上表乞師於魏 不從 王怨之 遂絕朝貢. 『三國史記』卷12, 蓋鹵王 條.

백제는 적어도 5·6세기 이전 왕인(王仁)박사가 일본에 논어와 천자문을 전해 주었고, 아직기(阿直岐)가 일본에 사신으로 가서 태자에게 한자를 가르쳤다.⁶¹⁾ 5세기대의 개로왕국서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한문문서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 국서에서도 “不從”이라하는 구절은 2군데 발견할 수 있다. 하나는 “今若不從詔旨”로서 “지금 만약 조서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으로 해석된다. 또 하나는 말미에 “不從 王怨之”라 하여 “(위나라가) 따르지 않아 왕은 이를 원망하다”는 내용이다. 공히 무엇을 따르다, 행하다, 좇다, (말을) 듣다 등으로 대체로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5세기대의 개로왕국서에서 부중은 뒤에 목적어를 수반하기도 하지만 단독으로도 쓰여 문미에 보이고 있다.

3. 道敎와의 연관성

흔히 매지권은 도교적 문화색채를 담은 매장용의 문자자료라고 회자되고 있다. 그런데 과연 백제 무령왕릉 매지권의 내용으로 도교를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매지권은 우선 부장용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상장의례의 시대적 유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당시 백제에서 전통적 의미에서의 도가문화가 아닌 불교와 같이 본격적인 종교로서의 도교가 행해졌다고는 단정 지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고대로부터 인접국인 중국과 접촉해온 때문에 중국고대 제자백가의 사상과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백제는 특히 남조와의 교섭이 두드러지는 시기인데 남조의 사상과 문화가 보다 강렬하게 수용될 수 있었던 시대적 배경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그러한 사실을 대변하고 있다. 그런데 도교의 전신이 될 수 있었던 중국 고대의 신선, 황로, 도가 사상 등은 중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전 시기 문화저변에 포진하고 있던 토착신앙과 사상이기에 굳이 종교적인 의미가 가미된 도교를 운운하지 않더라도 전통문화의 토대위에서 충분히 구현될 수 있는 문화적 요소이다. 이 때문에 도교의 본산지인 중국에서도 도교의 기원과 범주,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어떤 문화적 특징을 도교라는 단어로 지칭하는 데는 근본적으로 상존한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무령왕릉은 비교적 고식을 보이고 있고 동한 이후 남조시기에 이르면 매지권도 토착신앙과 미신적 요소를 가미하여 독특한 형식으로

⁶¹⁾ 왕인박사와 아직기에 대해서는 3세기설, 5·6세기 설 등이 있어 이견이 분분하다.

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분명 그 자체가 도교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무엇보다 도교적 풍습이 보다 가미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의 경우가 그렇다 하더라도 또한 시대상이 다른 우리나라의 종교적 상황과 동일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다른 한 예로 중국 감숙성 돈황을 위시한 소위 양주(涼州)지구는 서역의 불교가 중국 내륙으로 전해지는 시기 융성했던 조기불교의 중심지로 알려진 곳인데 서진(西晉)에서 십육국(十六國)시기에 이르는 이 일대 묘장에서 발견되는 도편(陶片)이나 도병(陶瓶)에서 보이는 진묘문에서는 불교의 영향과 함께 매지권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문구인 “如律令”이나 “急急如律令”과 같은 용어가 즐겨 사용되었다. 이에 대해 이 지역에 불교가 성행했던 시기, 역시 낙양(洛陽)과 장안(長安)에서와 같이 도교의 전신이 되었던 전통적 신앙형식을 보여주는 기존의 “천사도(天師道; 五斗米道)”와 “방선도(方仙道)”가 융합된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⁶²⁾ 이들 지역에서 비교적 많이 발견되는 진묘문들은 불교가 융성하나 뿌리 깊은 상장의례의 미신과 풍습이 함께 한 무덤에서 공존하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또 하나 부기할 것은 무령왕릉 매지권의 “不從”과 관련하여 이들 도병 진묘문에서도 말미에 “不件” 또는 “不得復來” 등의 부정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사자와 생인간의 엄격한 구분과 함께 생인에게 그 어떤 재앙도 미치지 않게 함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V. 맺는말

한대의 지권을 살펴본 결과, 그 성격에 따라 그야말로 순수한 묘지의 내용만을 보이고 있는 것, 현실생활에서의 토지매매문서와 같이 묘주를 위한 매지권(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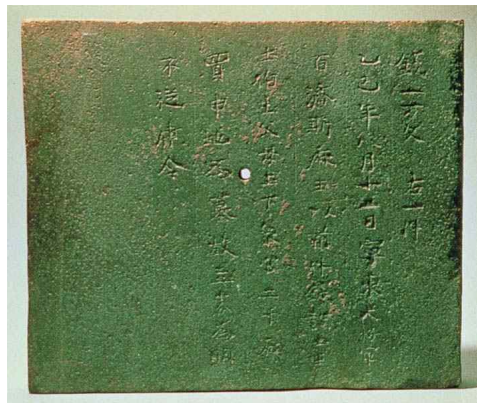
⁶²⁾ 祁家灣310호묘에서 출토한 도편에 보이는 문구는: “……皇子□女寶女……寬□申□覺□光生南□□兒道□教之效女佛生德文佛德□□”이다. 동반 출토의 2건의 두병 진묘문은: “神璽二年八月辛酉朔廿三日癸未 敦煌郡西鄉里民佃富昌命絕身死 令下斗瓶鉛人五谷 用當地上之福 死者自受其殃 生死各異路 不得相注件 便利生人 如律令”; “神璽二年十一月己丑朔八日丙申 敦煌西鄉里民……不件 如律令”이다. 敦煌三危山下 출토의 건흥삼년(343年)전량묘에서 출토한 도병의 진묘문에는 “佛女”와 “急急如律令”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地上生人 青鳥子詔令死者佛女自受其殃 ……不加罪福 ……遠去他鄉 不得復來 急急如律令”姜伯勤 1996, 『敦煌藝術宗教與禮樂文明—敦煌心史散論』,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80쪽.

地券)의 성격을 포함한 것, 또 다른 하나는 도교 방사(方士)가 산자와 죽은 자를 위한 내용으로 충만한 진묘권(鎭墓券)의 성격을 띤 것으로 나눌 수 있었다. 무령왕릉 매지권은 매지권임을 권문에서 이미 밝히고 있고 당시 남조에서 유행했던 상장의례의 풍습과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무령왕릉 매지권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지권의 연원과 형식 분석을 통해 남조에서 새롭게 나타난 보다 도교적 성격이 짙은 매지권문이 아니라 전통적인 방식으로, 고식의 형식을 띠고 있음도 동시에 알 수 있었다.

필자는 논문 제목에서부터 “不從”과 “律令”을 별게하였다. 이로써 기존의 “不從律令”이란 문구의 해석을 벗어나 보다 명확한 의미를 전달하고자 함인데, 본문에서 매지권문 중 “不從”의 해석은 “律令”과는 별개로 그 앞의 문장과 관련하여 지하신들에게 따르지 않는다, 종속되지 않는다, 곧 묘의 주인임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律令”은 현대의 공문서 말미에 자주 사용된 표현이기도 하면서 곧 동한이후 남조시기에 걸쳐 매지권에 채용되어 빈번하게 나타나는 비교적 고식의 함축적인 표현이다. 무령왕릉 지식에 나타난 매지권문을 포함한 지문들은 전반적으로 그 문장이 간결하고 극히 필요한 문구들만을 채용한 것으로 보이며, 부종율령을 해석함에 있어 “不從”과 “律令”으로 떼어 “不從(如)律令”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이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도가들이 그것을 수용하여 만들었던 도교적 의미의 율령의 효과를 고려하더라도 매지권을 통해 무령왕이 묘역의 주인임을 곧 율령에 따라 집행할 것을 강력하고 초인적인 힘으로 선포한 것이 된다. 백제가 도교에 대한 전면적 이해와 수용이 좀 더 빨랐다면 중국의 예와 같이 율령의 앞에 다른 수식어들이 붙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이와 같은 풍습을 받아들이면서 분명 당시 남조에서 유행했던 도교나 그와 관련된 풍습들을 접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백제의 도교에 대해 단언하기는 어렵다. 우리는 백제가 이미 수준 높은 한문을 구가했음은 다른 한문자료를 통해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현대의 전통과 남조의 유풍을 받아들였던 백제의 문화적 성향을 감안할 때 상장의례에서조차도 지나치지 않으면서도 적극적으로 시대유행을 수용하고자 했던 백제의 의지가 엿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부종율령”의 문구에서 기존의 해석처럼 율령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석하기보다 “不從” 즉 종속되지 않는다는, 主從의 상대적인 개념에서 묘역의 주인 주인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함이 어떨까 하는 견해를 제시하면서 매지권문의 관용어구인 “律令”은 문서 말미의 종결어구로서 보다 강력한 알림과 선포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을 피력하였다. 또한

앞에서 중국 매지권의 연원과 형식을 고찰해봄으로써 매지권이 동한이전시기 많이 나타나는 고지책(告地策)과의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과 함께 관련된 유사한 유물들의 용어를 정리하고 도식화하여 보다 명확하고 심도 있는 이해를 도모하였다. 지금도 관련 유물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고 연구자료 또한 집중하고 있으므로 이 분야 연구의 개진을 기대하며 필자의 소견에 대한 관련 연구자들의 질정을 바란다.



도3. 무령왕릉 매지권(사진)

■ 투고일 2010년 7월 20일 | 심사완료일 2010년 9월 10일 | 게재확정일 2010년 9월 30일 ■

참고문헌

- 『三國史記』卷12.
『魏書』東夷傳 第30.
端方, 『陶齋藏石記』.
劉承幹, 『希古樓金石萃編』.
羅振玉, 『貞松堂集古遺文』; 『蒿裏遺珍』; 『地券徵存』, 1918年.
『洪亮吉集』第五冊, 中華書局, 2001.
葉昌熾, 「買地券」, 『語石』卷五.
中國國家圖書館藏拓, 善拓 583-133.
瀧川政次郎, 「急急如律令」, 『律令の研究』, 刀江書院, 東京, 1931年 初版
(1965復刻). 史樹青, 「晉周芳命妻潘氏衣物券考釋」, 『考古通訊』,
1956年 第2期.
範文瀾, 『文心雕龍注』, 人民文學出版社, 1958.
王國維, 『觀堂集林』第三冊, 中華書局版, 1959.
郭沫若, 「申述一下關於殷代人殉的問題」, 『奴隸制時代』, 人民出版社, 1954.
_____, 「由王謝墓志的出土論到蘭亭序的真偽」, 『文物』, 1965年 第6期.
黃增慶·周安民, 「桂林發見南齊墓」, 『考古』, 1964-6.
湖北省博物館, 「武漢地區四座南朝紀年墓」, 『考古』, 1965年 4期; 郭沫若,
「由王謝墓志的出土論到蘭亭序的真偽」, 『文物』, 1965年 6期.
『羅雪堂先生全集』第13冊, 文華出版公司(台北), 1968.
見魯波, 「漢代徐勝買地鉛券簡介」, 『文物』, 1972年 第5期.
『武寧王陵』, 文化財管理局, 1973.
李壽岡, 「也談“地券”的鑒別」, 『文物』, 1973年 第7期.
任昌淳, 「買地券에 對한 考察」, 『武寧王陵發掘調查報告書』Ⅱ.副葬品 3,
1974.
李丙燾, 「百濟武寧王陵 出土誌石에 대하여」, 『韓國古代史研究』, 1976.
方詩銘, 「從徐勝買地券論漢代“地券”的鑒別」, 『文物』, 1975年 第3期; 「再
論“地券”的鑒別」, 『文物』, 1979年 第8期.
仁井田升, 『中國法制史研究(土地法·取引法)』, 東京大學出版會, 1980年.
洛陽博物館, 「洛陽東漢光和二年王當墓發掘簡報」, 『文物』, 1980年 第6期.
唐金裕, 「漢初平四年王氏朱書陶瓶」, 『文物』, 1980年 第1期.

- 張傳璽,「論中國封建社會土地所有權的法律觀念」,『北京大學學報』,1980年 第6期.
- 陳直,「漢初平四年王氏朱書陶瓶考釋」,『考古與文物』,1981年 第4期.吳榮曾,「鎮墓文中所見到的東漢道巫關係」,『文物』,1981年 第3期.
- 揚州博物館·邗江縣圖書館,「江蘇邗江胡場5號漢墓」,『文物』,1981年 第11期.
- 池田溫,「中國歷代墓券略考」,『東洋文化研究所紀要』第86號,1981.
- 陳直,「漢初平四年王氏朱書陶瓶考釋」,『考古與文物』,1981年 第4期.
- 羅宗真,「南京新出土梁代墓誌評述」,『文物』,1981-12.
- 池田溫,「中國歷代墓卷略考」,『東洋文化研究所紀要』86,1981.
- 長沙市文物工作隊,「長沙出土南朝徐副買地券」,『湖南考古輯刊』第一輯,嶽麓書社,1982.
- 吳天穎,「漢代買地券考」,『考古學報』,1982年 第1期.
- 張傳璽,「中國古代契約形式的源和流」,『文史』第16,中華書局,1982.
- 廣西壯族自治區文物工作隊,「廣西壯族自治區融安縣南朝墓」,『考古』1983-9.
- 湖南省博物館,「湖南資興晉南朝墓」,『考古學報』,1984年 第3期.
- 秦公 輯,『碑別字新編』,文物出版社,1985.
- 廣東省博物館·香港中文大學文物館,『廣東出土晉至唐文物』,香港,1985.
- 鄭求福,「武寧王 誌石 解釋에 對한 一考」,『宋俊浩教授停年紀念論叢』,,1987.
- 邢義田,「秦漢的律令學」,『秦漢史論稿』,東大圖書公司,台北,251 頁,1987.『道藏』18冊,文物出版社,1988年.
- 廖晉雄,「廣東始興發現南朝買地券」,『考古』,1989年 第6期.
- 北京圖書館金石組編,『北京圖書館藏中國歷代石刻拓本彙編』第一冊,中州古籍出版社,1989.
- 李焯 編撰,『中國古代磚文』,知識出版社,1990.
- 成周鐸,「武寧王陵 出土 誌石에 關한 研究」,『무령왕릉의 연구현황과 제문제』,公州大學校 百濟文化研究所,1991.
- 米如田,「“遣策”考辨」,『華夏考古』,1991年 第3期.
- 南京市博物館,「南京市博物館藏六朝墓誌」,『東南文化』,1992-5.
- 劉黎明,『契約·神裁·打賭』,四川人民出版社,1993.
- 黃盛璋,「江陵高台漢墓新出“告地策”、“遣策”與相關制度發覆」,『江漢考古』,1994年 第1期.

- 張傳璽主編,『中國曆代契約會編考釋』,北京大學出版社,1995年.
- 王志高·董廬,「六朝買地券綜述」,『東南文化』,1996-2.
- 黃盛璋,「雲夢龍崗六號秦墓木牘與告地策」,『中國文物報』,1996年7月14日 第三版.
- _____,「揭開告地策諸謎——從雲夢龍崗秦墓、邗江胡場漢墓木牘談起」,『故宮文物月刊』(台北)第14卷 第8期,1996.
- 彭浩,「戰國時期的遺策」,『簡帛研究』第2輯,法律出版社,1996.
- 朱國平·王奇志,「南京西善橋輔國將軍墓誌考」,『東南文化』1996-2.
- 姜伯勤,『敦煌藝術宗教與禮樂文明—敦煌心史散論』,中國社會科學出版社,1996.
- 王志高·董廬,「六朝買地券綜述」,『東南文化』,1996-2.
- 章灣·力子,「南京西善橋南朝墓志質疑——兼述六朝買地券」,『東南文化』,1997年1期.
- 謝承仁 主編,『楊守敬集』第8冊,湖北人民出版社,1997.
- 殷蓀,『中國磚銘』,江蘇美術出版社,圖版上冊,1998.殷蓀 主編,『中國磚銘』,江蘇美術出版社,1998.
- 鹹陽市文物考古研究所,『鹹陽教育學院漢墓清理簡報』:劉衛鵬,『漢永平三年朱書陶瓶考釋』,『文物考古論集——鹹陽文物考古研究所成立十周年紀念』,三秦出版社,2000.
- 錢大昕,「楊紹買地券」,『十駕齋養新錄』卷一五,江蘇古籍出版社,2000.
- 洪石,「東周至晉代墓所出物疏簡牘及其相關問題」,『考古』,2001年 第9期.
- 王育成,「考古所見道教簡牘考述」,『考古學報』,2003年 第4期.
- 國家圖書館善本金石組編,『先秦秦漢魏晉南北朝石刻文獻全編』,北京圖書館出版社,北京圖書館藏(石印64開本) 索書號 古520·04-925-3,2003.
- 莫志東,「淺析桂林地區出土的南朝買地券及其相關問題」,『桂林文化』,2003年 第3期.
- 阪出祥伸,「冥界の道教的神格——“急急如律令”」,『東洋史研究』,62-1,2003(6).
- 黃景春,『早期買地券、鎮墓文整理與研究』,華東師大博士論文,2004.
- 劉昭瑞,「記兩件出土的刑獄木牘」,『古文字研究』第24輯.
- 劉屹,『敬天與崇道——中古經教道教形成的思想史背景』,中華書局,2005.
- 黃義軍等,「河北鄂州郭家細灣六朝墓」,『文物』,2005年 10期.

- 廣州市文物考古研究所, 「廣州市淘金東路中星小學南朝墓發掘報告」,
『羊城考古發現與研究』(一), 北京文物出版社, 2005.
- 張伯元, 『出土法律文獻研究』, 商務印書館, 2005.
- 李顯冬, 「民有私約如律令」, 『政法論壇』, 2007年 3期.
- 白須淨眞,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무령왕) · 왕비 합장묘의 묘권(墓券·매지
권) · 묘지석(墓誌石)에 관한 한 제언」, 『권영필교수정년퇴임논총』, 2007.

Abstract

“Bujong(不從)” and “Eulleong(律令)”
on the stone epitaph-plaque King Muryeong’s tomb

Lee, Jung Hyo

This argument what is “不從律令” ’s phrase appears the record of a landowner for the deceased person inscribed on the stone epitaph-plaque King Muryeong’s tomb since Han Dynasty about six dynasty for that authentic comparison and review over the related terms and concepts to interpret this cleaned up and validated.

Here I like the existing interpretation of the phrase does not comply with the than to interpret “不從” and “律令” individually, to understand and “不從” is or is not dependent on, King Muryeong is the landowner of area that displays this “律令” is concluded by the end of the document with the phrase of more powerful and declared willingness to represent the view expressed that this is reasonable.

In addition, every time in front of China and consider the type of the opened by the record of a landowner for the deceased person inscribed on the stone epitaph-plaque when a previous present a lot of Bamboo & Wooden Slips of the tombs(告地策) and of the hook are formed with similar artifacts related to their terms and clearer than a graphical illustration and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fair**.

Key Words : King Muryeong’s tomb, Stone epitaph-plaque, Record of a landowner, Inscription, Bujong(不從) and “Eulleong(律令)